

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--

# 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소 방 위 원 회  
수석전문위원 윤 영 창

#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 1. 회부경위

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10월 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10월 8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 2. 제안이유

충청북도 조직개편(2008. 7. 1.)에 따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,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위탁대상기관을 산업단지별로 규정하던 것을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신속한 위탁업무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

## 3. 주요내용

### 가.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

- “혁신담당관” ⇒ “성과관리담당관”
- “정보통신담당관” ⇒ “정보화담당관”
- “경제정책팀” ⇒ “경제정책과”
- “전략산업팀” ⇒ “전략산업과”
- “기업지원팀” ⇒ “기업지원과”

### 나. 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위탁대상기관의 포괄적 지정

- 산업단지 관리업무와 위탁대상기관을 산업단지별로 규정하던 것을 신속한 위탁업무 추진으로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

## 도록 포괄적으로 지정

### 4. 검토의견

#### 가. 개정개요

개정조례안은 충북도의 조직개편(2008.7.1)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, 기업지원과 소관 사무 중 산업단지 관리업무와 위탁대상기관을 산업단지별로 규정하던 것을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.

부서명칭 변경은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해가 되며, 산업단지 관리업무 및 위탁대상기관의 포괄적 지정은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해 조례 개정절차 진행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, 일정부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.

#### 나. 타 시도 사례

위탁대상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타 시도의 조례를 조사해 보면, ①울산광역시·충청남도·전라남도는 포괄적 지정방식을, ②부산광역시·경상북도·경상남도는 수탁기관 지정방식을 취하고 있고, ③서울특별시·광주광역시·대전광역시·강원도는 위탁기관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있으며, ④대구광역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·전라북도·제주특별자치도는 위탁사무와 위탁기관을 별표에 규정하지 않고 사안별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.

## 다. 검토의견

기본적으로 조례 등 법규문서에 포괄적 규정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, 금번에 제출된 산업단지 관리업무와 위탁대 상기관의 포괄적 지정은 관련 법률인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관리권자 등) 제②항 제3호와 제4호에서 규정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한정하고 있 고, 이 같은 포괄적 규정으로 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산업단지 관리업무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겠음.

다만, 의회와의 업무공유 및 간접통제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업 무 위탁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의회에 보고하는 체제를 갖추 는 등 포괄적 지정에 대한 보완방안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.

붙임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.